

---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

2020. 3.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 ■ 목 차 ■

I. 경제위기 진단 .....	1
II. 분야별 정책 개선과제 .....	4
【요약】 .....	4
1. 산업 일반 .....	8
① 코로나 <sup>발</sup>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8
②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	11
③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13
④ 화평법 기업부담 완화 .....	14
⑤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 .....	15
⑥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확대 .....	16
⑦ 민관 합동 한국 기업·투자환경 설명회 추진 .....	18
⑧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	19
⑨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 .....	21
⑩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	23
⑪ 규제당국의 기업대상 행정조사 한시적 유예 .....	24
⑫ 공항, 역사 등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대상 확대 .....	25
⑬ 공공시설 임차료/도로점용료 한시적 인하 .....	27
⑭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인하 .....	28
⑮ 교역주요국 입국금지 해제 적극 노력 .....	29
⑯ 국책은행의 대출금 상환 연장 .....	30
⑰ 코로나19 검사 위탁기관에 사내진료소 포함 .....	31
⑱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임의상환) 한시 유예 .....	33
⑲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	34
2. 유통 .....	35
①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폐지 .....	35

# ■ 목 차 ■

②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주문 허용 .....	36
③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	37
④ 지역사랑 상품권의 대형유통시설 사용처 확대 .....	38
⑤ 판매촉진규제 적용예외 확대 .....	39
⑥ 판매장려금 지급 허용 .....	40
<b>3. 석유화학 .....</b>	<b>41</b>
①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제 .....	41
② LPG 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	42
③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증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	43
<b>4. 콘텐츠(영화산업) .....</b>	<b>45</b>
①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 면제 .....	45
② 영화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47
<b>5. 건설 .....</b>	<b>48</b>
① 민간공사 피해구제 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 .....	48
② SOC 예산 확대 및 조기 집행 .....	49
③ 예비타당성조사 금액기준 상향 .....	50
④ 건설현장 계약업무 지침 및 가이드라인 보강 .....	51
<b>6. 관광 .....</b>	<b>53</b>
① 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 한시 지원 .....	53
②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	54
③ 관광·서비스업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분류 .....	55
④ 관광호텔 TV수신료 합리적 적용 .....	57
⑤ [종식이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	58
<b>7. 물류 .....</b>	<b>59</b>
① 택배차량 증차 기준 및 절차 완화 .....	59
② 택배업계 방역물품 지원 .....	60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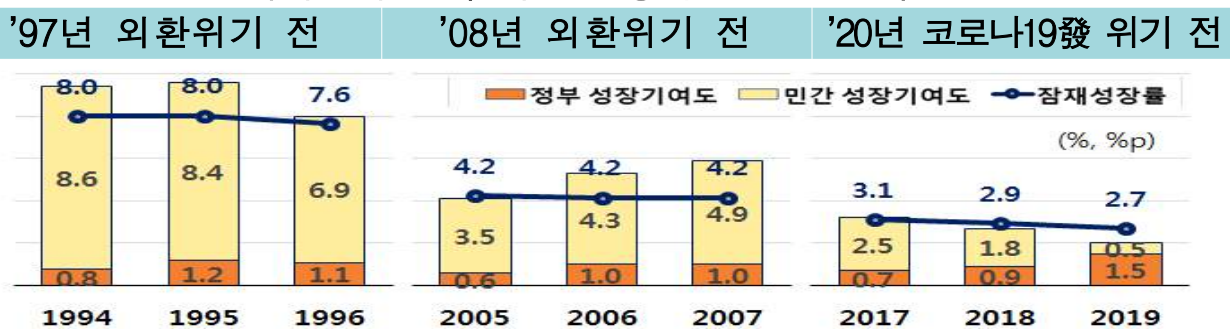
③ 수출 선박 대기시간 최소화 .....	61
④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유예기간 연장 .....	62
8. 반도체 .....	63
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연장 .....	63
9. 항공 .....	65
① 항공사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대 .....	65
②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허용 .....	67
③ 항공운송지원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68
10. 가전 .....	69
① 가전제품 수요 창출 촉진제도 마련 .....	69
11. 디스플레이 .....	70
① 수출 장비의 항만 대기 관리비 부담 경감 .....	70
12. 의료·바이오 .....	71
①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	71
②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	73
13. 제약 .....	74
①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 유예 .....	74
14. 자동차 .....	75
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75
15. 중공업 .....	76
① 한전·발전사 관련 제품 생산업체 지원 .....	76
III.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역할 .....	77

# I. 경제위기 진단

◆ 자영업자·중소·내수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주력산업·대기업까지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적자·자금난·구조조정에 내몰리는 종합위기. 기업들 도산이 가시화되면 금융위기로 번져 '97년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퍼펙트 스톰'

- [거시경제] '97년(외환위기), '08년(금융위기)를 뛰어넘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
- (세계경제) 세계 수요·공급망 냉각 및 인적·물적교류 제한으로 세계 GDP가 대폭 감소할 전망, 최악에는 세계GDP의 10% 손실 전망도 제기
  - \* (브루킹스研) GDP 2.3~9.2억 달러 감소, (WHO·WB) 세계GDP 2.2~4.8% 손실
  - \* (ILO) 세계실업자 530만~2470만 명 증가, '08년 때 실업자(2200만명) 넘을 우려
- (한국경제) '97년·'08년 위기 때 민간활력, 기초체력 덕에 V자 반등, 지금은 기업·산업에 족쇄가 많아\* 복원력이 약해졌는데 위기가 발생
  - \*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화평법·화관법·산안법 등 親노동·反기업 정책
  - \*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BIS), '19.3분기 101.1%로 20년 만에 최대('99.1Q 113.6%)
  - \* 코스피지수 고점 대비 20% 하락 속도 : 現 20일 > '08년 55일 > '97년 83일

< 역대 3대 위기 직전의 경제 펀더멘털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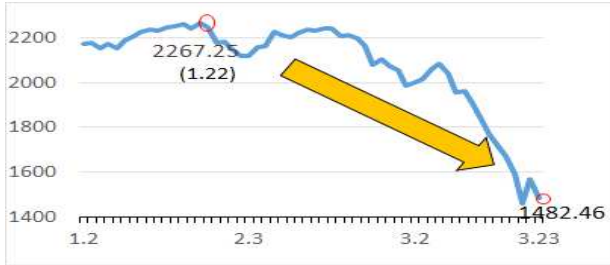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OECD Economic Outlook('19.11)

- [금융시장] 코로나발 경기침체 공포로 11년 만에 주가지수 최저치(1500선 하회), 환율 최고치(1280원대)를 경신, 더블쇼크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짐
- (주가) 외국인인 코스피시장에서 3월 순매도한 것만 10.7조원으로 sell korea 지속, 주가지수가 연일 폭락으로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수차례 발동
  - \* 사스·메르스 때는 주가가 13거래일 이내 직전수준 회복, 이번은 한달 넘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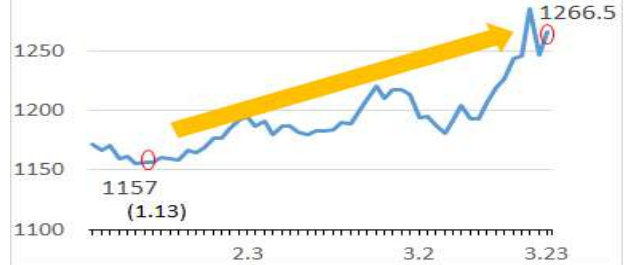
- (환율)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로 폭등세를 잠시 멈췄지만 외환시장 불안 잔존, 원화약세는 외국인 자금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촉발

< 주식시장(KOSPI) >



\* 출처: Capital IQ

< 원/달러 환율 >



\* 출처: 한국은행(종가기준)

□ [내수산업] 기업·가계의 일상활동 중단으로 국내 수요절벽 발생

- (항공·관광) 국내외 여행·소비수요 급감으로 항공·여행·호텔업계 경영난 심화, 휴업·희망퇴직 등 자구책에도 한계상황에 내몰림

\*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 `19.3.16일 19만명 → `20.3.16일 1.6만명(△91.6%)

- (내수서비스) 자영업자가 많은 외식업, 도소매업 등은 매출이 대폭 감소, 경영난 때문에 이들 업종에서 해고, 폐업이 가시화

\* 전국 도소매업 가맹점 중 매출액이 50% 넘게 감소한 곳이 4곳 중 1곳

\* 취업자 증감(만명) : 도소매 △9.4(1월) → △10.6(2월), 3월 하락폭 확대 전망

< 월별 방한 외국인관광객 >



\* 출처: 한국관광공사, 기획재정부

< 전국 도소매업 가맹점 매출액 영향 >



\* 출처: 전국가맹점주협의회(3.19)

□ [부실·부도] 사태 장기화시 기업·자영업자의 이윤이 줄어 자금상환여력은 떨어지고 자금조달은 어려워져 부실·부도 급증 가능성

- (자영업·中企) 빚 갚기 버거운 자영업자·중소법인이 연초부터 증가세, 코로나 여파가 시작된 2월 통계부터 연체율 급증 가능성

- (기업) 신용도 하락 우려로 회사채 발행시장이 냉각, 우량채 물량 소화도 저조, 4월 이후 연내 만기도래 회사채가 38조원으로 자금난 우려
  - \* S&P(3.12), 신용등급평가 대상 韓기업 중 23%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노출

< 자영업자·중소법인 연체율 >



\* 출처: 금감원(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 회사채 발행금액 >



\*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 [기업충격] 기초체력 저하 상태에서 코로나19 생산·소비·수출 충격 발생, 많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 중이며, 자금난으로 줄도산 우려
- (구조조정) 항공·유통 감원태풍, 중공업·자동차·정유 등 전방위 확산
- (항공업) 작년 4분기 적자에 이어 올해 해외입국제한조치 및 운항중단으로 상반기 6.3조원 매출피해 예상, 업계가 생사기로에 선 상태
  - \* LCC 4개사 국제노선 운항 전면중단, A사·B사도 미주·유럽까지 중단 (A사 일일 국제선 운항편수) `19.3.16 269편 → `20.3.12 44편 (△84%)
- (자동차) 공장셧다운 확산, 판매절벽 가시화, 국내 2만여개 부품업체의 구조조정·도산 위험이 커져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위기
  - \* C사 2월 중국 판매량 : 중국 내 자동차 총판매량 급감(△90%)으로 97% 감소
- (정유화학) 작년부터 이어진 정제마진 악화, 항공기 운휴에 따른 연료 수요 급감, 유가폭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이 겹쳐 업계 최대 위기 상황
  - \* FnGuide 컨센서스(3.19) : D사, E사 모두 1분기 적자전환 전망
- (철강) 완성차 생산중단, 선사 발주연기 등 철강 전방산업인 조선·자동차산업이 위축되어 도미노식으로 철강업계가 수요급감, 재고급증 직면
  - \* F사, `19.4분기 29년 만에 분기 적자 기록 → 최근 단조사업 물적분할 단행, 강관사업부 매각검토 등 사업구조개편 착수

## II. 분야별 정책 개선과제

### ■ 총 15개 분야 54개 정책 개선과제(요약)

분류	현황 및 문제점	정책 과제
산업 일반 (19)	재정확대·통화완화 중심의 대책으로 위기 극복에 한계	코로나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한시적(2~3년) 규제유예’ 추진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해도 기활법 적용대상 한정적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적용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코로나19관련 법인세 신고· 납부 유예제도 대상 제한적	피해 업종(大, 中小 불문) '20년 신고·납입분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규제비용 증가로 화학물질 취급하는 국내 산업 타격 우려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기간 1년 유예
	전세계적 교역감소, 경기 침체 대응 위한 국제 공조체제 중요	보호무역조치 동결(감축) 협의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 감안 시 통화스왑 규모, 대상국 확대 필요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확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해외 투자자금 유출 등 우려	민관 합동 한국 기업·투자환경 설명회 추진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 애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생산차질에 따른 기업의 신축적 대응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단위기간 연장 (3개월 → 1년)
	민간 국내 투자 하락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설비투자 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행정조사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저해할 우려	규제당국의 기업대상 행정조사 한시적 1년 유예
	대·중견 기업은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	공항, 역사 등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대상 대기업 포함
	공공시설의 임차료와 도로점용료 수익 매년 증가	공공시설 임차료/도로점용료 한시적 인하 (50% 이상 감면)
	코로나19 사태로 실제 교통유발 대비 부담금 과중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1년) 인하
	전 세계 179개국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교역주요국 입국금지 해제 적극 노력 건강증명서 발급 → 신속통과 요청
해외 현장실사 불가로 해외법인 대출 연장 곤란	국책은행의 대출금 상환 연장後 실사	



분류	현황 및 문제점	정책 과제
	산업현장 내 신속한 코로나 진단 조치 필요	코로나19 검사 위탁기관에 기업 사내진료소 포함
	주가 급락으로 인한 주식 담보대출 반대매매 가능성 확대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 유예 및 채무 보증 (1년)
유통 (6)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제한적으로 제도혜택에 한계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 경영 악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1~3년) 폐지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배송 권장 필요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 배송 허용
	대형마트 내 입점 영세상인 보호 필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제한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확대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음	판매촉진규제 적용예외 확대 (자율인 경우 조건없이 허용)
	판매장려금 규제로 소비자의 혜택이 감소	판매장려금 지급 허용
석화 (3)	관세/수입부과금 부과 근거 부족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으로 국내생산 LPG 역차별	LPG생산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및 면제
	모든 중유에 개소세 부과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콘텐츠 (2)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매출액 손실 급격한데 고정비 높아 고용유지 애로	영화산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건설 (4)	코로나19로 인한 민간공사 피해보상 관련 조치 부족	민간공사 피해구제 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 (행정처분 유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SOC 예산 불포함	SOC 예산 확대(3조원) 및 조기 집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 현실화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금액기준 상향 (500억원 → 1000억원)

분류	현황 및 문제점	정책 과제
	코로나19에 따른 공공계약 집행 지침 및 가이드 배포	건설현장 계약업무 지침 및 가이드라인 보강 (사전예방적 지연에 대한 지원 포함)
관광 (5)	여행 취소 급증에 따른 여행업 부담 증가	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 한시(1년) 지원
	호텔업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책 필요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재산세 50% 감면)
	관광서비스산업은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아 부담 과다	관광·서비스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관광호텔 TV 수신료는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획일적 징수	관광호텔 TV수신료 합리화 (공실비율 감안)
	관광산업 조속 정상화 필요	(종식이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공유숙박허용, 국내여행소득공제100만→300만)
물류 (4)	엄격한 택배차량 증차 제한으로 산업경쟁력 저하	택배차량 증차 기준(1.5t→2.5t) 및 절차 완화
	택배인력 감염 노출 위험	택배업계 방역물품 (마스크 등) 지원
	수출선박 해상 대기 시간 연장(14일)	수출 선박 대기시간 (14일) 최소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기업 물류 비용 증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유예기간 연장 (코로나 사태 종료시까지)
반도체 (1)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시 장기간 소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비자 기간 연장 (3개월 → 6개월)
항공업 (3)	글로벌 코로나 확산으로 쉐 국적사의 피해 확대 (6월까지 6.3조원 매출피해예상)	항공사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대 (정책금융지원 대상 : LOC → 전체 항공사)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불허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허용
	항공운송지원 회사 경영 실적 악화(상반기 3.7조원 매출손실)	항공운송지원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전 (1)	계절가전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양책 필요	가전제품 수요 창출 촉진제도 마련 (으뜸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예산 1500억→3000억원)
디스플레이 (1)	통관통제 등에 따라 수출 장비의 항만 선적 대기 증가	수출 장비의 항만 창고비 등 관리비 부담 경감

분류	현황 및 문제점	정책 과제
의료·바이오 (2)	대면 진료로 인한 전염 확산 우려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긴급 의약품 적시 생산을 위한 대책 필요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제약 (1)	약제 재평가 연내 시행시 제약업계 부담 가중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1년) 유예
자동차 (1)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위기 당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70%) 연장 (6월→연말)
중공업 (1)	생산과 부품수급 차질로 인한 납기지연 발생	한전·발전사 관련 제품 생산업계 지원 (지체상금면제, 선금지급률 70% → 90% 상향)

## 1. 코로나<sup>發</sup>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으로 소비·투자수출 등 부진
  - 소비 심리가 메르스 사태('15.6월)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러한 심리 위축이 전 방위적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양상
    - \* 소비자심리지수: '15.5월 105.0 ⇒ 6월 97.7(△7.3p) / '20.1월 104.2 ⇒ 2월 96.9(△7.3p)
    - \* 백화점 매출 증감률(%): '19.11월 3.3 ⇒ 12월 △3.3 ⇒ '20.1월 △0.3 ⇒ 2월 △30.6
    - \* 국산승용차 내수판매량 증감률(%): '19.11월 △0.9 ⇒ 12월 6.6 ⇒ '20.1월 △15.7 ⇒ 2월 △24.6
  - 기업 심리는 유럽 재정위기('12.7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특히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올해 큰 폭의 실적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 향후 투자고용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 \* 제조업BSI: '12.6월 82 ⇒ '12.7월 71(△11p) / '20.1월 76 ⇒ '20.2월 65(△11p)
    - \* 매출액 1,000대기업(152개사 응답)은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간 매출액과 수출액이 각각 8.0%,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KERI)
  - 전 세계적 불안 확산으로 교역이 위축되고 금융시장 변동성 또한 커지고 있어,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큰 타격이 우려됨
    - \* 2월 일평균 수출액 전년동기비 11.7% 감소, 특히 對중국 일평균 수출액 21% 급감
    - \* 역대 외국인 월간 순매도: '20.3.1~17 8.87조 > '07.8월 8.7조 > '08.1월 8.54조
- [문제점] 정부 대책이 재정확대·통화완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추경 등 재정확대 정책은 사람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며, '08년 이후 저금리 기조 하에서 추가 금리인하로 과거와 같은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 기준금리: '08.8.7 5.25% ⇒ '09.2.12 2.00% ⇒ '15.6.11 1.50% ⇒ '20.3.16 0.75%
    - \* 코로나19 추경 총 11.7조원 중 세수부족분 총당 3.2조원, 실제 세출확대 8.5조원. 세출확대분은 민생·고용안정(3.0조), 소상공인·중기 회복(2.4조) 등에 사용

- 최근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완화 대책이 없었음
- 이번 사태 이전부터 정부는 기업정책, 노동정책, 세제 등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있었음
  - \* 규제강화 정책: (기업정책) 국민연금 활용한 기업경영 간섭,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 상법개정, (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세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
  - \* '19년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63개국): 전체 순위 28위 vs 기업규제 순위 50위

□ [정책과제]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09년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후 '12년, '16년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 한시적 규제유예를 시행된 바 있음
  - \* 한시적 규제유예: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경기회복시까지) 규제완화, 효력정지 또는 집행유예
    - ('09년)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280개 과제 확정·발표
    - ('12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 중 한시적 완화 26건 발표
    - ('16년)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303건 선정·발표
-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선정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폐지
- 향후 한시적 규제유예에서는 피규제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큰 규제 위주의 과감한 한시적 규제유예 필요
  - \* 한시적 규제유예 비공감 이유(기업 설문, 국회예산정책처, '11년) : 관심부족/내용에 대해 잘모름 26.3%, 실질적 혜택 체감 못함 21.1%, 무응답 52.6%

〈 한시적 규제유예 대표 사례 〉

- ('09년)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20년 → 15년 이상), 증축범위 확대(10%→30%)
- ('09년) 관광특구내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 옥외영업 2년간 허용
- ('09년)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설치시설에 대해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 ('09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음식점·편의점 등 →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 추가 허용)
- ('09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 2년간 완화(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3인 이상)
- ('16년) 여행업 자본금 기준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으로 50% 축소('18.6.30까지)
- ('16년) 산업단지내 공공시설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제한 폐지(종전 30% 내 설치)
- ('16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허용
- ('16년) 공장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19.6.30까지)

## 2.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 [현황]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중(2024년 8월까지 한시법)
  - 과잉공급 해소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산업 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대상
  -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상법·공정거래법상 규제 특례, 고용안정 지원, 세제·자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
  - 2016년 8월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2020년 2월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 받음
    - (규모별) 중소기업 100개(84.8%), 중견기업 11개(9.3%), 대기업 7개(5.9%)
    - (업종별) 조선 39개, 기계 18개, 철강 14개, 석유화학 11개, 섬유 5개, 유통·물류 8개, 전선 5개, 엔지니어링 3개, 반도체 4개, 자동차부품 2개, 전자회로 2개, 제약 1개, 디스플레이 1개, 기타 5개
    - (유형별) 신산업 진출 5개, 과잉공급 111개, 공동사업재편 2개
- [문제점]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위기상황을 맞아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해도 기활법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기활법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
  - 코로나19로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함
    - \* 매출액 1,000대기업(152개사 응답)은 코로나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 매출이 8.0% 감소할 것이라 전망(한국경제연구원, 20.2)
  - 금번 코로나사태로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이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으나 기활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등도 기활법 활용 불가

- 19년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기존의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기업으로 확대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사업재편 필요기업은 해당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움
- (사례1)항공운송업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전세계 항공사가 파산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할만큼 위기상황이지만 기활법 적용대상(과잉공급, 신산업, 산업위기 대응지역 주력사업)이 아님

<p>①과잉공급업종 기업(최근 3년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 항공운송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최근 10년(09-18) 평균이 7.77%, 최근 3년(16-18) 평균이 9.49%(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므로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p> <p>②신산업진출기업(조특법상 신성장동력 기술활용,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서비스생산산업으로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판정) → 해당사항 없음</p> <p>③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기업(현재 군산, 울산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진해구, 영암 목포·해남 등 6개 지정), 주된산업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매출비중 20% 이상) → 해당사항 없음</p>
--

- (사례2) 정유업계는 실적과 직결되는 정제마진 하락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감소에 이어 국제유가 폭락까지 덮치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나, 과잉공급, 신산업, 위기 대응지역 주력산업에 미해당

\* 매출액 영업이익률(산업연구원, 한국은행) : 석유화학 8.57%(10년 평균) VS. 11.09%(3년 평균), 석유정제 3.44%(10년 평균) VS. 6.04%(3년 평균)

## □ [개선과제] 기활법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기업으로 확대

-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래 예측 불가능성과 ‘잠재적 부실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라는 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활법을 모든 업종, 기업에 적용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을 유도할 필요

\* 기활법 적용대상 확대는 법률개정 사안이므로 실기의 우려가 있음.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여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 입법지연시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까지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잉공급 산업뿐만 아니라 우량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상시 사업재편을 지원



### 3.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 [현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 ○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 미 소멸 시 최대 9개월 까지 가능

- \* 대상 기업 :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및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지역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소재 기업,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여객·중국교역 기업 등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 '19.12월 결산법인은 올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가짐

\* '19년 3월 법인세 세수 총액은 19.4조원

#### □ [문제점] 코로나19 관련 법인세 신고·납부 유예제도의 대상이 제한적

##### ○ 법인세 납부 유예 대상이 자영업자·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기업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코로나19로 국내 항공업계는 여객수송이 사실상 All-Stop 상황이며, 인건비 및 고정비용 지출 조차 부담되는 비상경영상태 돌입

\* A사 승무원 대상 무급 휴직 신청 접수, B사 전 직원 10일간 무급휴직 등

##### ○ 매출·이익 등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영세 사업장은 피해사실 증빙이 어려움

\* 휴업 등으로 전월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피해사실 증빙 불가

#### □ [개선방향]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20년 신고·납입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간 유예

\* 코로나19 피해업종(예시) : 항공, 여행, 숙박, 음식, 유통, 해운, 운수 등

## 4. 화평법 기업부담 완화

- [현황] 과도한 화평법 규제로 인해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부담 가중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과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발생
    - \*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물질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증가 전망
  
- [문제점] 규제비용 증가로 화학물질 취급 국내 주력산업 타격 우려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학물질 등록 비용증가로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 물질 당 최대 47개 항목(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등)에 대한 테스트 필요하며, 테스트 항목 당 상당한 비용 수반
  - 영세중소기업은 과도한 등록부담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공급망 타격 가능성
  - R&D 화학물질은 다품종소량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 화평법에 따라 물질별로 면제확인 절차를 받아야 해 연구개발 환경을 저해할 우려
  
- [정책과제] 신규·기존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R&D용 화학물질 화평법 적용 제외 등을 통한 경영애로 개선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제조·수입량 0.1톤 이상에서 주요국 수준인 1톤 이상으로 상향
    - \* 유럽, 일본은 연간 1톤, 미국은 연간 10톤 이상일 때만 등록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유해화학물질 및 중점관리물질만 등록하도록 변경(現 제조·수입량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
    - \* 일본은 일부 위해성이 있는 물질에 한해 등록
  -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과도한 면제확인 절차로 인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화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일본은 별도의 면제확인 절차 없이 R&D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가능

## 5.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

- [현황]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 교역감소 및 이에 따른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
- [문제점]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 세계가 더 큰 불황에 빠지게 될 우려
- 2017년 ‘America First’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비관세장벽은 확대일로
  - \* '19년 5~10월 G20 국가 신규 무역제한 조치는 총 4,604억 달러로 역대 2위
- [개선 의견] G20 간 협조 체계 구축 및 보호무역조치 동결(감축) 협의, 다자간 경제협정 및 FTA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
- G20 국가 간 재정·통화정책 협조 체계 구축하고, 글로벌 교역 확대를 위해 각국 보호무역조치를 동결 또는 감축 협의
  - \* '18.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를 유도한 바 있음
- 다자간 경제협정 및 주요국과 논의 중인 FTA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
  - \* 다자간 경제협정 : RCEP(한중일 등 아시아-태평양 16개국 간 FTA) 상반기 중 완료, CPTPP(환태평양 11개국) 한국 가입 의사 조속 발표 등
  - \* 추진 중인 주요 FTA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정('18.3월 개시), 한-필리핀 FTA('19.6월),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19.6월 개시), 한-인도 CEPA 개정을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등

## 6.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확대

### □ [현황] 3.19일, 600억 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왑협정 체결·시행

\* 기간은 최소 6개월(상황에 따라 연장)

< 韓 통화스왑 체결현황 : 총 1,932억 달러 + α(캐나다 무제한), '20.3.19 現 >  
- (체결국) 美, 中, 캐나다, 스위스, UAE, 말레이시아, 호주, 인니, 다자(CIMM)  
- <과거사례> (미국) '08.10월 300억 달러('10.2월 종료), '20.3월 600억 달러(6개월간)  
(일본) '01년 시작, '15년 종료 ('11년 700억 달러)

### □ [문제점] 한국의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 감안 시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위기인 만큼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절실

#### ○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관계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어 이에 대비한 통화스왑 규모, 대상국 확대 필요

\* 한국무역협회, IMF, 통계청에 따르면 '17년 기준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7.5%로 G20 중 네덜란드(63.9%), 독일(39.4%)에 이어 3위

\*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20일 이후 3.23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5조 4,944억원 매도

#### ○ 특히, 현 외환보유고는 국제기구 권고 및 GDP 대비 현저히 부족함을 고려, 통화스왑 확대를 통해 위기상황 대응 필요

\* BIS(국제결제은행) 권고 기준 韓적정 외환보유고('20.2말 기준) : 7,899억 달러  
- 계산식 :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 + 외국인주식투자액 1/3 + 거주자 외화예금 + 현지금융잔액

\* 韓 외환보유고 : 4,092억 달러('20.2말)

\* 주요국 GDP('19년) 대비 외환보유고('20.1말) : 홍콩 131%, 스위스 121%, 싱가포르 77%, 일본 28%, 중국 25%, 한국 24%

### □ [개선 의견]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확대

#### ○ 주요 기축통화국 중 일본과의 통화스왑 체결이 시급하며 EU, 영국 등과도 통화스왑 확대 필요

\* 6대 기축통화국 : 미국, 일본, EU, 영국, 스위스, 캐나다

○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주요 기축통화국과 무제한·무기한 통화스왑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통화경쟁력 제고가 선결되어야 함

\* 주요국의 통화스왑 체결현황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 스위스 등과 체결

- (일본) 미국, 유럽, 스위스, 영국 등과 무제한/무기한 통화스왑 체결

## 7. 민관 합동 한국 기업·투자환경 설명회 추진

- [현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해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상황 악화 우려
- [문제점] 한국경제 펀더멘털의 견고함 등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시 외국인 자금 이탈로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

### ※ <참고> 과거 IR사례

-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전경련 제안에 따라 '99년 1~2월 미국, 유럽, 홍콩 국제투자자 대상 민관 합동 코리아 IR외교\* 전개
- \*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동경,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 7개 국제금융시장에 민관 합동사절단 파견, 한국 정부 경제개혁과 기업구조조정 설명회 개최
- '05년 오키나와 IDB연차총회시, 전경련 주관IR 추진 사례 有

전경련 뉴욕·홍콩 로드쇼	
21일부터 27일까지...조지소로스와 간담회도	
<p style="text-align: center;">오성철 기자</p> <p>5대 그룹 구조조정담당 책임자들이 미국의 거물투자자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를 만난다.</p> <p>전경련은 "21일부터 27일까지 뉴욕, 홍콩,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3</p>	<p>다"고 밝혔다.</p> <p>소로스와는 면담은 이번 설명회를 공동준비하는 미국의 투자전문기관인 베어스텐스사가 중재해 이뤄졌으며 면담시간은 1시간 정도로 예정돼 있다.</p> <p>소로스 역시 "한국의 기업인과</p>
<p>문감독위원회 위원배 부위원장,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 주식회사 대우 이경훈 사장, LG 이종석 부사장, 한진 정인용 고문(전 경제부총리)이 참석한다.</p> <p>최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원소장도 함께 참가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p>	

- [개선방안] 전 세계 주요 국제금융시장에 민관 합동 사절단 파견,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투자환경과 주력·유망 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

\* 파견 장소(여시) : 美 뉴욕, 英 런던, 獨 프랑크푸르트, 日 도쿄, 中 상해, 싱가포르, 홍콩 등

## 8.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 □ [현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연장 신청 가능

○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 근로시간 연장 사유가 되는 ‘특별한 사정’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및 재난 등의 예방,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갑작스런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업무량 증가,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 절차적 요건 : 근로자의 동의,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요

- 마스크생산업체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폭주하는 주문량의 상당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주52시간근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2.19일 취소 행정소송 제기

\* ‘마스크 대란’에 특별연장근로 허용하자 노동계 “근로시간 왜 늘리냐” 행정소송(조선 ’20.2.3)

### □ [문제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인가사유가 너무 협소하고 특별한 사유 입증에 불확실성이 커 활용에 애로

○ 업무량 증가 요건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해 지나치게 협소

- 중국산 자재 부품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생산직 뿐 아니라 구매/품질 검사/물류/환경안전 등 지원인력 업무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실제 인가는 생산 직접 업무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대응에 애로

○ ‘통상적’, ‘대폭적’, ‘단기간’, ‘중대한 지장’ 등 불명확한 용어로 기업의 특별한 사정 입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 원자재 수급 상황 변동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 고객의 요구 사항 변경 등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 증가가 필요한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희망시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필요
- [정책과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이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가제도 유연화 대책 마련 시급
- 중국산 자재·부품 수급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 최소화를 위해 제조 인력 외 구매/품질검사/물류/환경안전 등 지원인력의 특별연장근로까지 폭넓게 인가 확대 필요
- 재난수준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코로나19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별도의 신청/접수 절차 없이 전 산업 특별연장근로 자동인가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 필요



## 9.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

- [현황]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시행 중
  -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운영 중
    - \*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
    -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문제점]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급증 혹은 가동률 하락, 업무시간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짧은 단위기간, 복잡한 도입절차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어 효과 감소
  -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짧은 단위기간과 복잡한 도입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활용에 제약
    - 현행 단위기간(2주, 3개월)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지 않고, 선진국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 \* 근로시간 단축 이후 전자, 반도체, 패션, 건설기자재, 바이오제약, 가전서비스, 호텔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 \*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대체로 주 40시간제도 도입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증가로 뒷받침하기 위해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도입절차가 경직적이어서, 탄력근로를 적기(適期)에 도입하고, 대상 근로자를 적합하게 선정·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
      - \*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의 경우 적용되는 단위기간 동안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해서 노조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데, 단위기간 내 업무 및 생산 스케줄을 미리 특정하기가 실무상 어려운 실정
  
- [정책과제] 현 위기상황을 기업이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허용

- 단위기간 연장(2주 → 3개월, 3개월 → 1년), 도입절차 개선(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직무 및 부서 단위 노조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허용)

## 10.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 [현황] 민간 투자 증가율이 6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최장 기록
  - 코로나19사태로 민간부문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어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 하고, 해외 주요기관은 1%대 성장률 가능성 언급
  - 민간부문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18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마이너스(-3.5→-6.9→-6.4→-9.4→-6.4→-4.5→-2.9)로 '00년 이후 최장 기록 중
    - \* '08.4Q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8.4→-12.3→-9.0→-2.2), '12.2Q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1.8→-0.6→-1.3→-1.8) 이후 최장 기록(원계열, 전년동기비교)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된 후 고용창출을 요건으로 설비투자에 지원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17년 폐지
    - 현재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특정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나 축소 추세
  
- [문제점] 국민 對 기업, 대기업 對 중소기업 프레임에 갇혀 국내기업 투자여력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 조세지원제도 개정 지속
  - 자국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세율 인상
    - 지난 10년간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G7 5.4%p 인하, OECD 1.9%p 인하
    - \*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6개국 중 7위 (OECD 및 G7 평균 21.5%)
  - 기계장치 등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전무
  
- [정책과제] 침체된 민간부문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률을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순하고 효과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함

## 11. 규제당국의 기업대상 행정조사 한시적 유예

- [현황]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규제당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
- 규제당국이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기업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방대하고 유사·중복 조사도 많으며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빈발
  - \* '15년 중소기업 행정부담 인식조사(대한상의, 100보다 높으면 부담) : 행정조사 137, 법인세 121, 환경규제 102, 진입규제 67 등
  - \* '17년 519개 중소·중견기업 설문조사(중소기업옴부즈만)
    - 행정조사 부담(연간) : 451페이지 서류준비, 120일 및 905만원 소요
    - 행정조사 문제점 : △과도·중복 서류제출 △중복 행정조사 △과도한 조사주기 등
- 행정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07년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취지와 달리 매년 행정조사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정부도 인정
  - \* '17년 국무조정실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 보도('17.12.7)
- [문제점] 코로나 사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의 조사는 기업 경영과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
- 현실적으로 현재 기업들은 규제당국의 조사와 자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
- 기업들이 금년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당면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
- [정책과제] 코로나 위기 극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규제당국의 기업대상 신규 조사를 한시적(1년)으로 유예
- 규제당국의 기업 대상 신규 조사를 위기 극복시기까지 전면적으로 유예하고 기존 조사도 축소·간소화 필요

## 12. 공항, 역사 등 공공기관의 임대료 인하 대상 확대

□ [현황] 정부는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계획\* 발표(2.28)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 (지원대상) 소상공인법 제2조 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지원규모) ①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②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 6개월간 납부 유예
- (참여기관)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임대시설

□ [문제점] 대·중견기업이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다수의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를 들어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대기업은 '19년 전체 임대료 1조 761억원 중 91.5%인 9,846억원 납부

구분	기업형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1여객 터미널	대기업 면세점	6,014억	7,919억	9,483억	7,916억	<b>7,621억</b>
	중소·중견 면세점	125억	761억	796억	678억	609억
제2여객 터미널	대기업 면세점	-	-	-	2,002억	<b>2,225억</b>
	중소·중견 면세점	-	-	-	185억	306억
합계		6,139억	8,680억	10,279억	10,781억	<b>10,761억</b>

\* 자료: 김정우 의원실, 인천국제공항공사(단위: 억원)

○ 최근 매출이 급감하여 대·중견업체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

- 면세점, 식음료업의 특성상 문을 닫기 어려워 인건비가 계속 소요됨

구분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방한관광객	19.0%	19.5%	-16.1%	-31.2%	-47.9%	-48.1%
방한중국인	31.1%	24.9%	-37.3%	-71.2%	-81.2%	-80.4%
<b>면세점매출</b>	<b>2.4%</b>	<b>-14.3%</b>	<b>-23.4%</b>	<b>-42.0%</b>	<b>-38.4%</b>	<b>-40.4%</b>
영화관람객	-24.8%	-40.1%	-45.3%	-56.8%	-38.0%	-57.0%
놀이공원	0.9%	-6.1%	-55.1%	-73.6%	-63.5%	-71.3%
항공기탑승객	22.2%	7.9%	-35.2%	-69.2%	-83.5%	-84.4%

\* 자료: 법무부, 여신금융협회 등(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개선과제]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대상에 대·중견기업 포함

- 정부는 2.28일 이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 3.18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중견기업의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가 아닌 ‘납부유예(3~5월분)’에 그쳐, 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Ⅱ(관계부처 합동)

- 인천공항공사도 대·중견기업 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대·중견기업 입주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짐(매일경제, 3.16)

### 13. 공공시설 임차료/도로점용료 한시적 인하

- [현황] 공공시설 임차료와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국가에 금전 지급
- 공공기관은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도로관리청 역시 도로점용료를 수취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음

\* (근거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문제점] 공공시설의 임차, 도로점용료 수익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공적 성격보다는 수익추구에 치중한 측면이 있음
- 공공기관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일부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매년 수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적이 측면을 더 고려할 필요

<주요 공공기관 부동산 임대수익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1.8조원	1.9조원	2조원	2.3조원	2.4조원
증감률	-	5.5%	5.2%	15%	4.3%

※ 감사원

- 도로관리청(국토부/지자체)이 도로점용료 수취를 통해 얻은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중

<연간 도로점용료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점용료 (백만원)	196,174	234,897	245,890
증감율	-	19.74%	4.68%

※ 국토부

\* '14년 기준 전국 600만 도로용지 중 114만건에 대한 점용허가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88만건(부과비율 77.3%)에 2,459억원의 점용료가 부과됨

- [개선과제] 임차료/도로점용료 한시적 인하
- 임차료와 도로점용료를 1/2 이상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 14.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인하

- [현황] 정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되고 있음
  
- [문제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 정도 간 괴리가 커지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교통량이 전국적으로 줄어들음
  - \* 무디스는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평균 교통량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평균 교통량이 전년동기비 각각 20~30%, 20% 감소한 것으로 추산
  - \* 서울시는 정부가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2.23)한 후 24~28일 지하철·버스 일평균 이용객이 1.1~19일 평일 평균치보다 30.9% 감소했다고 밝힘
- 통상 자가용(개인교통)과 대중교통은 대체재 역할을 하는데, 현 사태로 인해 양자의 이용이 모두 줄어드는 기현상도 나타남
  - \* 서울시에 따르면 3월 첫 주 평일 자동차 통행량은 1월에 비해 7.2% 감소, 같은 기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 수는 34.5% 감소
  
- [정책과제] 교통유발 감소를 반영해 부담금의 한시 인하 필요(1년)
-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인하, 면제·경감 대상 시설물 확대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 필요
  - \* 단위부담금: 올해 기준 3천㎡ 이하 350원, 3만㎡ 이하(초과) 700원(1,000원)
  - \* 교통유발계수: 도시규모(인구), 시설물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계수 적용
  - \* 면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 등
  - \* 경감: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부담금 감면 노력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면제·경감 대상 등 조정 가능



## 15. 교역주요국 입국금지 해제 적극 노력

- [현황] 전세계 179개국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3.24 기준)
  -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을 전면금지하거나 일정기간 격리조치 또는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국가가 179개국에 달함
    -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 141개 국가·지역
    - 격리 조치: 15개 국가·지역(시설 격리)
    - 검역강화 및 자가격리 권고 등: 23개국
      - ※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 [문제점] 직원 해외출장 등 정상적인 수출업무에 애로
  - 외교부가 입국제한 정보의 신속 공지, 신속대응팀 파견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입국제한 조치 국가 수가 늘어나면서 직원 출장 및 정상적인 수출업무에 애로 발생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가 늘면서 기업의 해외출장이 사실상 봉쇄되고, 현지 바이어 미팅, 마케팅, 영업활동 등이 제한되고, 한국 주재원들을 감염자 취급하는 사례도 발생
    - \* 베트남/A사: 코로나19여파로 구미 스마트폰 생산 물량을 당분간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베트남 당국이 무비자 입국을 제한
    - \* 중국/경기 반도체장비업체 : 주문생산 방식 반도체장비 특성상 설계·사양 파악을 위해 현지 출장이 필수적이지만 출장이 불가하여 매출 15% 감소
    - \* 사우디아라비아/B사 : 국영기업 아람코와 수소에너지 사업협력을 위해 2월 말 임원을 출장 보냈지만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
  
- [정책과제] 정부차원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철회 노력 강화
  -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해당국에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 예외인정 요청 협의(국내 보건기관 검사결과 제출시 입국허용 또는 격리기간 축소 등)
  - 해외 비즈니스 출국자에 대해 필요시 신속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 및 건강확인증 신속 발행

## 16. 국책은행의 대출금 상환 연장

- [현황/문제] 코로나19로 중국 등 주요국 해외 출장이 금지됨에 따라 현장 실사 불가로 대출 만기연장 불가 사례 발생
- 모든 금융사에서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4월1일부터 6개월 유예 조치(3.19 비상경제회의)
  - 금년 중 차입 만기가 돌아오는 중국 등 대기업 해외법인의 정책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실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져 금융안정성 하락
  - \* A기업의 자회사 중국법인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아 금년도 중 만기가 예정되어 현장 실사 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중국 출장이 금지되었고 수출입은행은 현장 실사가 불가하여 대출만기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
- [정책과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연장(先연장 後실사)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만기를 일괄적으로 먼저 연장해 주고, 추후 해외 출장이 가능해진 후 실사 진행 필요
  - \* 작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결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은 대출 및 보증 만기는 일괄적으로 1년 동안 연장해주고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대출 만기연장 기간을 결정
-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감염병으로 불가피한 해외 현장실사를 이유로 기업의 금융안정성이 하락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

## 17. 코로나19 검사 위탁기관에 사내진료소 포함

- [현황]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해, 사내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 불가능
- 감염예방법 규정상 관리감염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사내진료소는 해당되지 않아 코로나19진단 불가
  - \* 코로나19 진단 가능 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과대학 및 검체물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으로 한정(감염병예방법 16조의2)
- 사업장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조), 사업장 자체에서 선임한 보건관리자 중 의료진 비율도 다수(의사 2.2%, 간호사 71%)
  - \* 보건관리자: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분야 학사, 산업보건지도사 등(산안법 시행령 별표6)
  - \* 보건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13,136개) 중 자체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은 3,214개(23.9%)

〈표〉 자체 선임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현황

보건관리자	구분	인원(명)
의료진	의사	77
	간호사	2,574
기타	산업보건 관련 인력	973
전체		3,624

\*자료: 안전보건공단('15년)

- \* A사의 경우 전국사업장에 의사·간호사 포함 수십 명의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B사도 전국 사업장에 10명이 넘는 의료진 보유 (전자신문, 3/2)

- [문제점] 산업현장에 코로나19 발생 시, 직원 격리조치·생산시설 섯다운 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빠른 진단 필요
-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의심자 발생 시 생산라인 폐쇄 등 큰 피해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확산 방지 위한 신속한 진단과 조치 필요
  - \* (사례1) A사 신입사원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리되어, 신입사원이 다녀간 교육건물 폐쇄하고 8,000명 자가격리 조치(2월)

\* (사례2) B사 구미공장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자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 일시 폐쇄(2월)

□ [정책과제] 코로나검사 위탁기관에 한시적으로 사내진료소를 포함

○ 검체 채취 및 검사를 처리하는 위탁기관에 전문의가 상근하는 사내 진료소를 포함하여, 사업장 내 의심환자 조기 진료 및 신속한 조치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감염병예방법 16의2, ①항)

\* 기준을 갖춘 사내진료소에 검체 키트 제공 및 검체 채취 허용

## 18.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임의상환) 한시 유예

- [현황] 주식보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 등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 운영 중
  - 자본시장법 제326조(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임의상환방법) 등
- [문제점]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급격 하락(담보가치 하락)으로 반대매매(임의상환)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및 경영권 위협 가능성
  - 주식담보대출 시 대출한 금액에 따라 담보비율이 정해지며, 주가 하락에 따라 주식평가액이 담보비율(1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은 주식 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매매 시행 가능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담보비율 등):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 최근 한국 증시의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 매도가 시행되면, 이로 인해 추가 주식하락이 발생할 가능성 → 이는 결국 투자자의 더 큰 피해로 귀결
  -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일부 대기업 대주주도 주식평가액이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시행될 우려 증대 → 안정적 경영이 어려워 기업 투자활동 등에 차질 발생 가능성
  - 금융위는 반대매매 억제를 위해 6개월간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를 발급했으나,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에 그침
    - \* 금융위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당국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3.13, 금융위)
- [정책과제] 한시적으로 반대매매(임의상환)를 유예하고 이에 따른 증권사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부 보증 추진(1년)
  - 주식시장 추가 하락 예방 및 기업 경영권 상실 리스크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임의상환)를 유예하고, 증권사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부 보증 추진

## 19.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 [현황] 특정품목에 관세율을 한시적 인하하는 할당관세 시행 중

○ (근거법령)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 (현황) 특정품목의 수입촉진, 국내가격 안정화 등의 목적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 비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시행

\* 관련 부처 요청을 수렴해 기재부가 1년에 2차례 지정하며 6개월 단위로 운용

\* '20년 기준으로 기초원자재(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농축수산물, 첨단산업 관련 설비 등 77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 인하 시행하고 있으며 총 5,910억원의 지원효과 추정됨 [출처] 기재부 ('19.12.24)

□ [문제점] 대상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제도 혜택에 한계

○ 실효성이 높은 제도이나 대상품목이 제한적인 상황임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물품수	52개	41개	74개	77개	69개	79개	77개

※ 기재부

○ 코로나19 사태로 산업의 경쟁력의 급격한 훼손을 막고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할 필요

\* 허용사유(관세법 제17조): ①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수입촉진② 수입가격 급등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③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 [정책과제] 할당관세 대상품목의 확대

○ 관련부처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할당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폐지

- [현황] 전통시장·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수를 월 2회로 규정
- 대규모(연면적 3,000㎡ 이상)·준대규모점포는 원칙적으로 월 2회(공휴일) 의무적 휴업 / 오전 0시~익일 10시 영업 제한
  - \* (법적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문제점] 의무휴업 규제가 코로나19로 내방고객 급감한 대형마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정부정책과도 상충
- 유통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에 월2회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 제한 등 정부 규제로 대형마트 성장이 감소세로 전환
  - \* 국내 1위 대형마트인 A사는 지난해 1507억원 영업이익을 내 전년 대비 67% 감소했는데, 이는 2013년(7,350억원)의 5분의 1수준, 최근 B사은 오프라인 매장 30% 감축안 발표
  - \* A사와 C사는 지난해 각각 158개, 140개 점포로 2017년 정점 대비 1~2개씩 역성장해 2018년 대형마트 3사의 매장 수가 전년대비 처음 감소세로 전환
-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쇼핑이 확산되고 내방고객이 급감해 대형마트의 매출이 추락한 가운데,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이 더해 매출에 타격을 입는 상황에도 의무휴업까지 지속
  - \* 1.31 A사 군산점 3일 임시휴업에 이어 부천점, 마포공덕점 휴업, 2.20 성수본점 휴업 → A사 한달만에 40억원이상 매출 감소 예상 (매장별 하루 3~5억원 매출 가정)
-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혼잡시간대 집객분산 유도가 용이해 소비자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
  - \* 퇴근 직후 시간대 등 혼잡 시간대에 고객이 몰리는 상황에 대한 완화 가능
- [정책과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 적용 한시적(1년) 폐지
- 최소한 방역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시 의무휴업 제외 필요
- 장기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검토

## 2.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주문 허용

□ [현황]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은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판매마저 불가능

○ 대규모(연면적 3,000㎡ 이상)·준대규모점포는 영업일수 제한에 따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주문 및 배송도 불가

\* (법적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문제점] 규제에 따른 효과 미미, 의무휴업제로 인한 생필품·방역제품 공급 차질 발생 등 소비자 불편 가중

○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 유도를 위해 시행됐으나 관련 규제의 입법 취지는 상실된 것으로 입증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의 62.0%는 중대형슈퍼를 이용(38.0%)하거나 다른 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24.0%)한다고 응답(전경련, '14년)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백화점이 근접한 경우 대형마트·백화점 휴무일보다 영업일에 전통시장 방문인원 증가(E컨슈머, '17년)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제품·생필품에 대한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는 현장에 물건이 있음에도 의무휴업일·영업제한시간에 묶여 영업을 불가능

- 의무휴업일이었던 2.23일에도 온라인 주문이 폭주했으나 배송 불가

□ [정책과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 허용



### 3.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 [현황] 전통시장·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일 수를 제한하는데 마트 내 입점 점포도 동일 적용
-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월 2회 의무휴무를 적용받고 있고 대형마트 Mall 내에 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점점포 또한 월 2회 의무휴무 똑같이 적용받음
  - \* (법적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문제점] 대형마트 내 입점 상인도 유통산업발전법이 보호하는 영세 자영업자
- 대형마트 Mall 내 입점한 상인도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이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영세자영업자를 살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 어긋남
- [정책과제] 대형마트 입점 점포는 의무휴무 대상에서 제외
-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개별사업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

## 4. 지역사랑 상품권의 대형유통시설 사용처 확대

- [현황]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내 소비에 한정된 화폐나 상품권을 발행·유통 중
  - (법적 근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기타 지역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행
  - (현황) 중기벤처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안산·경기지역 화폐 ‘다운’, 인천시의 ‘인천 e음카드’, 서울시 ‘서울사랑 상품권\*’ 등 (\*서울 시내 각 자치구별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를 통칭)
  
- [문제점] 지역 소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상품권의 유통과 소비 진작에 한계 발생
  - 지역상품권 도입 취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지만, 사용조건이 까다롭고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어서 상품권의 활용도가 떨어짐
    - \* 강원도의 경우 ‘17년에 830억원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유통액은 569억원에 그쳐 전체의 83%는 공공기관이 매입
  - 지역상품권은 기존 카드·현금 사용을 상품권으로 대체한 것일 뿐, 지역에서의 새로운 수요 창출 효과는 부족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의 지역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 지역 소상공인의 ‘17년 평균소득이 도입前 ‘13년 대비 0.1~2.13% 증가에 그침
    - \*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재래시장 직접 방문이 줄고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지역상품권의 활용도가 더욱 떨어지는 상황
  - 지역 소재 대형마트나 유통점 종사자들은 지역 거주민이 대다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근무 점포의 영업적자가 장기화될 경우 매장 폐쇄나 무급휴가 장기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큼
    - \* 소상공인연합회도 공무원복지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퍼마켓을 포함시켜서, 매출 회복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20.3.20)
  
- [정책과제] 지역상품권의 대규모유통시설(대형마트, SSM 등) 사용을 허용하여 유동성을 공급
  -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현금 유동성 확보가 목표인 만큼, 대형유통점 등에서의 사용을 허용

## 5. 판매촉진규제 적용예외 확대

- [현황]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행사를 규제대상으로 설정
  -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행사 전 약정서 체결의무, 판매촉진비용 분담의무 부과
  - 단, 자발적 차별적 행사는 적용예외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음 (→ 해당 의무이행 불필요)
  
- [문제점] 법상 판매촉진행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대규모유통업체의 의무가 과도한 상황
  - 최근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하여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판매촉진행사에 대해서도 동법을 적용
  - 적용예외 기준인 자발성과 차별성 중 차별성은 구체적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범위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
    - \* 차별성: 해당 판매촉진행사가 기타 납품업체의 행사와 구별됨을 의미
  
- [정책과제] 판매촉진규제의 적용예외 확대로 대규모유통업체 부담 감소
  - 납품업체 요청의 의한 행사 혹은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는 행사(이른바 가격할인행사) 등을 적용예외로 설정
  - 적용예외 요건 중 그 실체가 모호한 차별성 요건 삭제

## 6. 판매장려금 지급 허용

- [현황] 판매장려금은 거래관행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수 없음
-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체는 연간기본계약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액수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였다면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범위가 제한됨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문제점] 법상 Positive 규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합리적인 범위’의 판단기준으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하여 판매장려금 제한
-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매장려금을 허용하지만, ‘합리적 범위’ 조건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매장려금이 규제를 받고 있어, 판매장려 노력이 차단되며 소비자 혜택 감소
- [정책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2항 후단에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을 삭제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

## 1.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제

□ [현황] 원유 수입 시 관세(3%), 수입부과금(16원/리터) 부과 중

\* 근거법령: 관세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등

○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자재 무세화 정책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 필수 원자재에 0%의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1차 에너지원 중 38.5%('18년)를 차지하는 원유는 3% 관세 적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2조 112억원('18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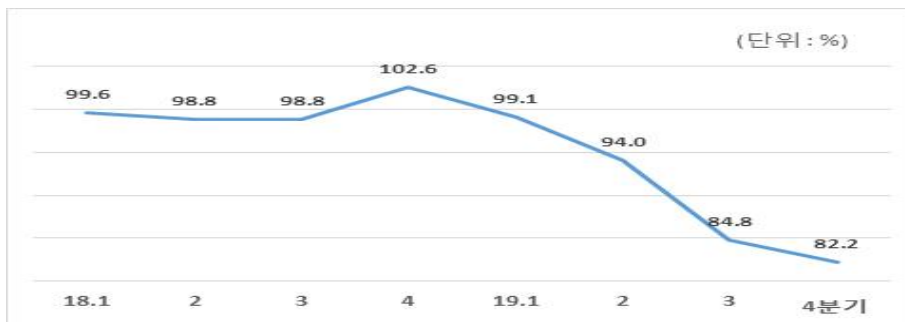
□ [문제점] 관세/수입부과금 부과의 근거가 부족하며 정유산업에 부담

○ OECD 국가 중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칠레·한국에 불과하며, 미국·칠레는 자국 생산 원유의 경쟁력 확보가 목적

\* 비산유국 중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대한석유협회)

○ 국내 정유산업은 수익성 악화·국제유가 하락·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공장 가동률을 축소하는 등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가동률 저하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분기별 정유사 가동률 추이 (한국석유공사)>



□ [개선과제]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수입부과금의 한시적(1년) 면제

○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 후생 증가

○ 정유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

## 2. LPG 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 [현황] 국내 LPG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유에는 수입부과금(16원/리터)이 부과되는 데 반하여 LPG 직수입 시에는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음

\* 근거법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등

- [문제점]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적용에 따른 국내생산 LPG에 대한 역차별로 에너지 안보저하 및 소비자 후생감소

-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LPG 수요 확대 등으로 수입 LPG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01년 약 55%→ '18년 약 64%)

\* '18년 기준 수입 LPG 662만 8,000톤, 국내 생산 LPG 375만 9000톤

- 국내 LPG 생산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인해 LPG 수입이 촉진되어 시장에서의 수급 왜곡과 에너지 안보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LPG 수입사의 국내 LPG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 가격 결정을 주도하여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개선과제] LPG 생산 분에 대한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 국내 LPG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시장원리에 따른 LPG 가격 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 기대

### 3.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 [현황]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

\* 중유(벙커C유 등)를 정제공정에 투입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등 제조

○ 현행법은 모든 중유에 대해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 (근거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명목으로 '개별소비세의 15%' 별도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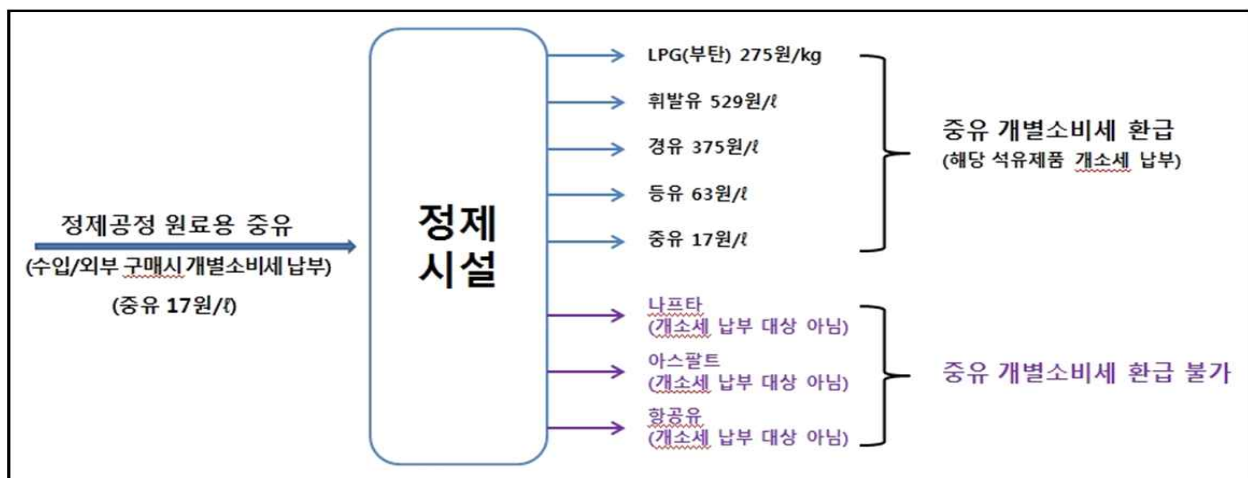
□ [문제점] 개별소비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성 문제도 발생

○ 원료용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원료용 중유를 투입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함 발생

- 정제공정에 중유를 투입해 생산되는 제품에는 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휘발유, 경유 등)과 ② 그렇지 않은 것(항공유, 나프타 등)이 있음

- ①의 경우 이중과세를 막고자 중유에 대해 기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반면(결과적으로 세부담 없음), ②의 경우에는 환급해주지 않음



\* 자료: 대한석유협회(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021661) 에서 재인용)

- 개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인 항공유, 나프타, 아스팔트 등의 경우 중유로 제조한 국내 생산제품이 원유로 제조한 국내 생산제품,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불리해짐
  - 중유로 항공유, 나프타, 아스팔트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을 생산한 경우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되지 않음(앞의 ②에 해당)
  - 원유(原油) 및 수입된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에는 개별소비세 미부과
- 현재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되는 반면, 석유정제공정용 중유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지 않아 산업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과제]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거나, 원료용 중유를 투입해 생산된 비과세대상 제품(항공유, 나프타, 아스팔트 등)에 대해 중유 개별소비세의 환급 허용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1661) 계류중
  - 코로나19로 전세계적 수요 위축\*을 겪고 있는 석유정제업이 개별소비세 면제로 경쟁력 있는 원료(중유)를 도입해 원가·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음
    - \* 한국석유공사 월간석유수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처리 공장 가동률은 86.1%로 전년동기대비 2.9%p 낮아짐



## 1.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 면제

- [현황] 영업 중단 및 관객 방문 회피로 16년 만에 최저 관객, 영화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 직면
  - 전국 영화관 관객 수, 16년만에 최저치 기록 (전년대비 70% 하락)
    - \* 영화관 관객수(2/1~3/15, 만명): ('19년)2,967 → ('20년)849 (△71%) (영진위)
  -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권고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조치로 전국 영화관의 산발적 영업중단과 관객 방문 회피 등 손실 발생
    - 영화관은 호텔/항공/공연업계 등과 동일하게 해당 시간에 좌석을 판매하지 못하면 재고 없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사업구조
    - 대구지역 영화관 등 전국 총 80여개 영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관리비/인건비 등은 지속적으로 지출
      - \* 멀티플렉스 3사 임대료/관리비/인건비 등 연간 약 7,100억원 규모
    - 2~3월(~3/15) 기간 동안 영화산업 매출손실은 약 2,000억원
      - \* 영화산업 연매출 약 2.5조원
- [문제점] 영화발전기금 납부 유예는 심각한 현실에 못 미치는 대책
  - 문체부는 상영관의 영화발전기금 납부 유예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 면제 대책 발표(2.26)했으나 업계 상황에 비해 정부지원 미비
    - 영화상영관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매월 납부해야하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 \* (근거법령)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제9조의 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영화산업에 대한 정책마련 중
  - \* 프랑스의 경우 인건비 일부 보상금 지원, 영화기금 납부기한 연기, 자동 지원금 先지급, 상영/배급업계 대상 정부 지원 대출 제공 등 지원정책 마련 中
  - \* 영국은 임대료 지원, 중국은 영화업계 지원을 위한 예산 특별배정, 극장 대상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혜택 등 검토

□ [정책건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유예 아닌 한시적 면제 필요 (영비법상 영화발전기금 면제 근거조항 마련)
  - 상영 부문뿐 아니라 배급(제작)부문을 포함한 全 영화업계에 혜택 필요

## 2. 영화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현황]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의 급격한 감소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지정하고 6개월간(-9.15)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발표(3.16)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인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90%로 인상

-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되며, 건강보험료도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음

□ [문제점]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산업이 특별고용업종에 지정되지 않아, 고용유지에 어려움

○ 영화산업의 매출액 손실이 2000억원(2/1-3/15)

○ 영화관의 급격한 매출 손실로 인한 경영 부담은 영화업계 전반의 고용 축소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구조

- 영화관은 관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관리비/인건비 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지출 필요

\* 국내 영화관 종사자 수(약 2.1만명)는 영화산업 전체 종사자(약 3만명)의 약 70% 수준

□ [정책건의] 영화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영화관업계 특별고용업종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완화, 소급 적용 등 필요

## 1. 민간공사 피해구제 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

-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공사 인력 및 자재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연기)된 경우, 공기지연과 공사비 증액 피해 발생
- 건설현장에서 감염자, 1·2차 접촉자 발생시 현장폐쇄 및 현장 협오에 따른 민원제기로 공기지연
  - \*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곳은 전국 30곳 이상(대한건설협회, 3.17 기준)
  - \* 전국공사현장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총 7개 사업장 15명(국토부, 3.4 기준)
    - 경기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5명), 성남 분당 아파트 신축공사(3명),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3명), 경북 성주 성주대교 확장공사(1명) 등
-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통관업무 제한 등으로 건축자재 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음
- [문제점] 코로나19에 대한 민간공사 피해보상 조치가 미미함
-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주지만, 민간공사는 피해보상 조치가 미미함
  - \* 기획재정부, 신종 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발표(2.12)를 통해 확진·의심환자 발생으로 인한 공공현장 공사 중지시 계약금액 등 적극 조정 방침
- 민간발주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공기연장이나 공사중단 조치에 대한 유인책 필요
- [정책과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공사 피해 발생시, 인허가 기관이 민간발주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활한 건설공사 유도
- 피해구제에 노력한 민간발주자에게 행정절차 간소화, 세제지원(취득세 경감 등) 조치
- 인허가기관 및 행정청의 행정점검, 행정처분을 일시 완화(유예)

## 2. SOC 예산 확대 및 조기 집행

### □ [현황] 건설수주 및 주택건설 감소로 건설경기 회복세 둔화

- 건설수주(선행지표)는 2019년 4분기에 상승 반전하였으나, 2020년 들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나타냄(통계청)

구 분	수주액(조원)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2019.11	13.33	2.78	10.54	11.8%	-2.2%	17.9%
2019.12	25.59	10.31	14.95	17.7%	39.8%	6.0%
2020. 1	8.50	1.79	6.66	-6.4%	-3.4%	0.9%

- 주택건설도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의 감소 등으로 지속 감소(국토부)

\* 건축허가 면적: '18년 160.9백만㎡→'19년 144.2백만㎡ (전년대비 - 10.4%)

\* 건축착공 면적: '18년 121.2백만㎡→'19년 109.7백만㎡ (전년대비 - 9.5%)

### □ [문제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SOC 예산 불포함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추경안 11.7조원에 SOC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서민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 우려

\* SOC 예산 1조원 증가시 1만8천개 일자리가 창출되며, 건설산업은 하도급 업체,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식당 등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와 긴밀히 연관된 산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 □ [정책과제] 정부 주도의 건설투자 재원 조성 및 SOC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 모색

- 경기회복을 위하여 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편성(SOC 3조원)

\* 사스('03년) 추경 7.5조원 중 1.5조원, 메르스('15년) 추경 11.6조원 중 1.5조원 SOC 예산 편성

- 2020년 SOC 예산 최대한 조기 집행

- 국토부 및 SOC 관련 공공기관의 2020년 1월 재정집행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

\* 1월 SOC 관련 집행실적: 국토부 7.8%, 한국도로공사 2.6%, 한국철도시설공단 0.4% 등

-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재난선포지역(대구·경북)에 SOC 사업 우선추진

### 3. 예비타당성조사 금액기준 상향

□ [현황]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금액기준 개선 필요

○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래 대상사업 금액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정의: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 및 평가 과정

\* 현행 대상사업 금액기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 [문제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과 면제 기준 완화 필요

○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성장과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임

\* 제도 도입 이후 GDP 3배 이상, 재정지출 5배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 큼

□ [정책과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금액기준 상향 조정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금액기준 조정안

(현행)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개선)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

## 4. 건설현장 계약업무 지침 및 가이드라인 보강

- [현황]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공공계약 집행 지침 및 가이드 배포
  - \* (국토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4판)
  - (기재부) 신종 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 (행안부) 신종 CV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 발주기관은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현장의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
-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
- [문제점] 사전조치시 규정 미비, 불가피한 지연시 규정 미흡
  - 확진환자, 의심환자 발생 이전 소독, 방역을 위해 선제적·예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불분명함
    - 과거 미세먼지, 폭염 당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공사기간을 늘리지 않고 추가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사례 발생
  -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재공급 차질, 인력수급 문제로 인한 노임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 [개선과제] 사전조치시 규정 추가, 불가피한 지연시 규정 강화
  -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등 사전조치 시에도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보강
    - 공사현장의 전면적 소독,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일정기간을 정해 시공사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함
- 자재·인력수급 차질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 자재공급 차질, 인력수급 문제로 인한 노임 상승, 장비 임차여건 악화, 특정자재 가격 급등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 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타 금액 조정 발생 가능
  - \* 아스콘이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아 레미콘으로 자재를 변경해 공사 진행, 인력을 쓰는 대신 장비를 구입해 공사 진행, 공사를 중단하고 최소 인력 운영 등
  - 상기의 경우 계약금액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1. 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 한시 지원

-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취소가 급증하여 업계 부담 및 위약금 관련 민원 급증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취소가 급증하여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단체비자발급 비용 등)가 발생하여 업계 부담 가중
    - \* 아웃바운드 전문 12개 여행사 기준 예약취소율 44.7%(한국여행업협회, '20.2월)
  - 코로나19 사태 이후(1.20일~3.8일)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8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
    - \*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 '19.1.20 ~ 3.8(658건), '20.1.20 ~ 3.8(6,887건)(한국소비자보호원)
- [문제점]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국가의 입국통제 강화에 따라 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발생경비에 대한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별도 정부 대책 부재
  - 정부는 해외국가 입국통제국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수수료 면제·조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업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부재
    - \* 공정위는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면제·조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여행업계에 전달(공정위 정책브리핑, 3.10일)
  - 입국금지 조치(136개국), 격리 조치(중국 등 15개국) 등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통제 강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위약금 면제에 대한 여행사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해외국가 입국통제 현황은 3.23일 기준(외교부))
- [정책과제]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통해 여행업계 위기 극복 및 정상화에 기여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한시적(1년) 지원 검토
    - \* (법적근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2.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 [현황]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내외 여행,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호텔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호텔업계는 최근 2~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제도적 변화, 숙박시설 공급과잉,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 \* 서울시 호텔 등록 현황(객실수) : 46,947(16년) → 53,454(17년) → 58,248(18년)
  - 코로나 19 확산 이후 호텔 투숙 및 연회행사 등 예약 취소가 급증하면서 호텔업계 전체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
    - \* 평균 객실이용률(주요 7개 업체) : (1월1주) 70.7% → (3월1주) 5.6%(△ 65.1%p)(기획재정부)
    - \* 코로나 19 확산(1월 4주차) 이후 숙박업 매출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감소

### 코로나 19 전후 숙박업 매출 증감율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기간	1월			2월		
	2주차	3주차	4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증감율	2.7	0.0	-0.9	-17.7	-10.8	-24.5

자료 : 기획재정부

- [문제점]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호텔업계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부재
  - 경영난 속에서도 대부분의 호텔들은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납부 부담도 지고 있는 실정
    - \* 2008년에 관광산업 활성화 및 내수소비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호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한 사례가 있음
- [정책과제] 호텔업계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 한시적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대해 호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허용

### 3. 관광·서비스업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분류

□ [현황] 현재 관광서비스산업용 전력 요금체계는 일반용으로 분류

<전기요금체계>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적용부문
		시간대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3~6, 9~10월)	겨울철 (11~2월)	
농사용	(병) 1,070	-	36.40	36.40	36.40	-
산업용	(병) 6,510	경부하	38.80	38.80	38.80	고압B, 선택Ⅲ
		중간부하	80.60	58.20	73.30	
		최대부하	141.3	80.60	103.10	
일반용	(을) 6,660	경부하	40.50	40.50	40.50	고압B, 선택Ⅱ
		중간부하	85.20	62.40	78.10	
		최대부하	149.00	85.20	106.60	

※ 한전 요금단가체계 중 관광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대표 사례만 비교함

계절별 시간대별	여름철 (7월 1일 ~ 8월 31일)	봄·가을철 (3월 1일 ~ 6월 30일, 9월 1일 ~ 10월 31일)	겨울철 (11월 1일 ~ 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23:00 ~ 09:00	23:00 ~ 09:00	23:00 ~ 09:00
중간부하시간대	09:00 ~ 11:00	09:00 ~ 11:00	09:00 ~ 18:00
	12:00 ~ 13:00	12:00 ~ 13:00	
	17:00 ~ 23:00	17:00 ~ 23:00	
최대부하시간대	11:00 ~ 12:00	11:00 ~ 12:00	18:00 ~ 23:00
	13:00 ~ 17:00	13:00 ~ 17:00	

□ [문제점] 산업용 전력요금에 비하여 고가의 요금이 적용되어 경영에 부담

○ (예시) A사의 경우 '09년 총에너지비용(97억 6,810만원)중 전기요금이 51.5억원으로 53%를 차지하여 경영난 직면

○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 절감되는 비용을 관광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형 관광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투자에 활용 필요

- [정책과제] 관광서비스산업용 전력요금을 산업용으로 분류하거나, 관광서비스산업용 전력요금체계를 별도로 신설
- 관광서비스산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규모, 종류, 외국인 이용 업종 등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산업용으로 분류하거나, 관광서비스산업용 전력 요금체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4. 관광호텔 TV수신료 합리적 적용

- [현황] 관광호텔의 경우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비치된 TV 전체대수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음
-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TV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관광호텔은 객실 등에 비치하고 있는 모든 TV에 대하여 비치대수만큼 수신료를 납부
  
- [문제점] 객실공실 비율이 고려되지 않는 등 비합리적인 기준
- 성수기에도 이용률이 100%인 경우는 드물고 비수기의 경우는 객실 이용률이 20~40%까지 낮아지므로 이용수수료 성격의 TV 수신료를 전체 보유대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음
- 방송법 시행령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는 수신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호텔의 경우에도 객실 이용률에 비례하여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합리적
  
- [정책과제] 공실비율 및 외국인 투숙비율 감안하여 수신료 부과

## 5. [종식이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 [현황] 사드 배치('16년), 한일 관계 악화('19년) 등 이미 악화된 관광산업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수요 급감으로 여행업계는 '20.2월까지 최소 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국여행업협회)
  - 코로나19 사태가 메르스 수준('15.5월~12월)으로 확산 시 관광수입 4.6조원, 취업유발인원 78,100명 감소 예상(한경연, '20.2월)
  
- [문제점] 관광산업 환경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 미흡
  -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한국 관광산업 피해 확대
    - \* '19.7~8월 한-일 관광교류 위축으로 한국 생산유발효과 399억원 감소(한경연, '19.10월)
    - \* 한일 관계 악화 이후 '19년 하반기 방한 일본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18년 하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 한국관광공사)
  - 공유숙박업 등 혁신 관광산업에 대한 제도지원 미비
    - \* 도심지역 공유숙박 이용 가능자를 외국인으로 제한(관광진흥법)
    - \* '20년부터 민박플랫폼인 위홈을 대상으로 본인 거주,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주택, 연 영업일 180일 이하 등 조건 하에 2년간 시범사업 진행(과기정통부)
  -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인한 국내관광 위축 심화
  
- [정책과제]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관광산업 환경 개선과 조기 회복을 위한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공유숙박업 등 혁신 관광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금액 한도(現 100만원→300만원) 확대
  - 코로나 19 이후 관광업계 매출 진작을 위한 정부지원
    - \* 호텔을 정부기관 하계 휴양소로 지정, 정부기관 행사시 호텔 이용
    - \* 체험학습·학생 단체 등 해외여행 자제 및 국내 관광 캠페인 전개

## 1. 택배차량 증차 기준 및 절차 완화

- [현황] 1.5톤 미만 택배차량에만 신규 사업 허가 및 차량증차 허용
- '04년 운송사업 허가제 도입 이후 신규 사업 허가 및 차량증차를 엄격히 통제해오다 1.5톤 미만 택배차량에 한해 증차 허용(18년)
  - \* 택배를 할 수 있는 운송사업의 종류 택배만 할 수 있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 번호) 운송사업과, 택배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사업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바,사,아,자' 번호)로 구분
- 국토교통부가 매년 화물자동차 허가 시행계획을 공고
- [문제점] 전세계적인 이커머스 시장 확대와 택배물량 증가, 대형고객사 증가로 차량기준 변경 필요
- 택배물량은 연평균 10%이상 증가로 배 번호판의 수시 발부가 필요하나 접수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발부에 한달 이상 소요
  - \* 신규 수요 발생시 한시적이지만 자가용 번호판 부착 후 배송하게 됨
- [정책과제] 배 번호판 대상차량기준을 2.5톤까지 확대 필요 및 번호판 수시 접수·발부시간 단축

## 2. 택배업계 방역물품 지원

- [현황]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민들이 생필품 구매 등의 경제활동을 택배와 배달에 상당 부분 의존
  - 쌀, 라면 등 생필품 배송이 평소의 4배 수준까지 증가했고, 택배기사들이 하루 평균 300 ~ 400 곳에 배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물류협회)
- [문제점] 택배기사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방역 비용 증가
  - 택배기사들이 오히려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마스크 대란의 지속으로 현장에 필요한 마스크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택배기업 1주당 마스크 사용량 및 소요비용>

분야	1일 수요 (명)			1주 당 수요량 (2일 1매사용)	주당 소요비용
	택배기사	분류작업	총계		
택배업	52,511	26,256	78,767	236,300 매	7억 890만 원

- [정책과제] 대인 접촉이 많은 택배업계 특성을 고려해서 마스크 구입 등에 대한 지원 요망
  - 행정조치를 통해 공적물량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물량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택배기사들에게 공급
  -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 비용 지급과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 세액 공제 허용



### 3. 수출 선박 대기시간 최소화

- [현황] 코로나 19 확산 이후 해외 항만에서 출입국 방역과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
  - 국내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호주 등 일부 해외 항만에서 한국발 선박에 대해 출국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입국을 허용
  -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어 향후 전세계적인 출입국 방역 및 검역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문제점] 해외 항만에서의 방역 및 검역 강화로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를 출발한 화물이 일부 국가 입국을 위해 14일 동안 해상에서 대기해야 해서 국내 수출입기업과 물류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정책과제]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수출 선박의 해외 항만 대기시간 최소화 필요
  - 한국발 선박에 대한 출항전 방역조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국 정부를 설득하고, 해외언론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함
    - \*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해외출국자들의 검역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항공여객 검역 방식이 세계적 표본이 될 만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언론에 게재(3.12)된 사례 참조

## 4.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유예기간 연장

### □ [현황] 20년 1월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중

-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화물차를 대상으로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운송 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위탁 운임)의 최소한도를 지정하는 제도 시행 중

\* '20년 안전운송운임 : 컨테이너(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km당 평균 957원)  
안전위탁운임 : 컨테이너(km당 평균 2,033원), 시멘트(km당 평균 899원)  
(국토교통부 '19.12.12)

\* '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며, 시행후 2개월 동안 계도 위주의 유예기간 설정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2 등

### □ [문제점]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국내 제조 및 수출입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 원화주 기업들의 물류 비용 지출도 증가했고, 물류기업(운송업체)들의 마진율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

-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화주로 유권해석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내륙 운송에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게 되면서 비용이 증가

\*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물품을 받는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의 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을 관리하고 주선하는 업종

### □ [정책과제] 안전운임제도 유예기간 연장 필요

- 물류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운임제 과태료 처분의 유예기간을 종전 2월에서 코로나 사태 종료 시까지 연장

-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화주로 인정하지 않고 화물운송주선업으로 인정

## 1.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연장

- [현황]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제한 조치가 확대되며, 기업 활동에 심각한 제약 발생
- 코로나확산 방지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 입국제한 강화 조치 시행
  -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3.19 기준)
  - \* 특별입국절차: 도착 직후 건강상태질문서·특별검역신고서 작성·전용입국장 이용→체온측정, 자가격리 대상자 안내→자가진단앱 설치 →유·무증상자 구분→유증상자 확진 시 입국거부, 입국심사 통과 후 확진 시 격리조치
  - \* 일본발 국내 입국자는 사증면제 및 기 발행된 사증효력 정지, 여행경보 격상(3.9 기준)
  - \*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
- [문제점]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출국 후 국내 재입국을 위해서는 최소 1~2개월 소요
- A사의 경우, 現 국내 체류중인 일본 장비업체 인력이 200명 이상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비자 대부분은 30~90일 체류 가능한 단기 취업 비자(C-4)
  - \* C-4 비자: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취업해 영리활동을 하려는 외국 인력 대상으로 발급(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 단기비자 만료 후 국내 재입국을 위한 기간 최소 1~2개월 소요 : 본국 2주 격리 → 건강증명서 발급(1~2주) → 비자 재신청/승인(1~2주)
  - \* 일본의 한국발 입국자 조치: 한국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3.9부터)
- [정책과제] 설비 도입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C-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기간 연장 (3개월→6개월)

- 업계 외국인 인력은 해외 장비 도입 시 같이 들어온 해외장비전문가들이 많아, 공정 일정 차질 최소화를 위해 이들의 C-4 비자 연장
  - \* (유사 사례1) 코로나 확산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 체류기간 연장(2월부터)
  - \* (유사 사례2) 코로나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 지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어업분야 인력난 부족 해결 위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50일 연장(2.21, 법무부)

## 1. 항공사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대

- [현황] 전년 대비 전체 국제선 이용 급감으로 인한 매출 타격
- 전년 대비 전체 국제선 여객 91.7% 급감(3월2주 기준), 한국發 항공노선 여객에 대한 각국의 입국제한조치 확대
  - \* 한국發 여행객에 입국 금지 또는 절차 강화한 국가 179개국(3.24 기준)
- 일본 수출규제 여파 지속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국적사 '20.6월까지 최소 6.3조원 매출 피해 예상

월평균 여객 전망			매출액 손해 추정
	기존 전망	수정 전망	
2월	535만 9천 명	268만 7천 명 (기존 전망대비 46.7% 감소)	0.7 조원
3~6월		37만 8천 명 (기존전망 대비 92.5% 감소)	5.6 조원

\* 자료: 한국항공협회('20.3월)

- [문제점] 날로 악화되는 항공업계 현황과 항공사 규모를 불문한 심각한 피해 상황 고려 시 기존 대책으로 역부족
- 대규모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항공업 특성상, 정부가 추진하는 3,000억 원 규모 긴급융자로는 부족하며, 긴급융자 지원 대상도 LCC에 한정
  - \* 예) B737 항공기(190좌석) 1대 구매 시 약 1,300억원 소요
  - \* LCC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저리융자 제한 및 대출심사 기간 장기화로 항공사가 단기간 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까지 확산되었고 장기화(6개월 이상)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시설사용료 납부 유예(3개월) 조치로는 부족
  - \* 인천·한국공항공사 시설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시행중('20.3월부터)
  - \* 공항공사 별 납부유예 일수에 따른 추가 이자 부과(1.54~1.6%)로 3개월 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정책과제]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쉰 국적사로 확대하고, 지원 확대
  - 항공사 규모를 불문하고 항공업계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LCC에 한정된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쉰 국적사로 확대
    - \* 정책자금 지원 현황 : 항공수요 위축, 예약취소, 환불급증 등 매출이 급감한 항공사에 운영자금 긴급융자 지원(LCC 대상 최대 3천억원 규모) (2.17, 경제정책장관회의)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장기화가 전망되므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을 ‘20년 말까지 연장
  - 고사 직전인 항공업 상황을 고려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사별 지원액 상한을 늘리고 긴급 지원
    - \* 업계 상황을 고려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기반 운영자금 융자한도 상향(現 항공사별 지원 상한 60억원)하고 긴급지원
    - \* [참고] 국내외 주요산업 및 항공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사례

구분		내용	시기
국내	해운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19년
		· 물류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최대 2,000억 원 지원 · 긴급경영자금 600억원 지원	‘20년
	조선	· 제작금융, 보증 등 7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 및 1조원 만기연장	‘19년
해외	미국	· 코로나19 관련 500억 달러(62.2조원) 항공산업 지원 추진 (3.19 기준)	‘20년
	중국	· 항공사 노선별 보조금 지급	
	호주	·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 약 5,155억원 규모(7.2억 AUD)	
	싱가포르	·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 약 995억원 규모(1.1억 SGD)	

자료: 한국항공협회, '20.3월

## 2.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허용

### □ [현황]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불허

- 국제선 운항 항공기 내 판매 상품은 관세당국의 적·하기 신고를 득한 상품에 한하여 판매 가능
- 관세청은 국제선에 탑재되지 않은 기용품에 대한 영업활동 불가 결정
  - \* 항공사에서 제한적인 기내 탑재환경을 감안해, 기내에 탑재되지 않은 상품을 통신판매 형태로 기내에서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불허
  - \* 통신판매: 우편·전기통신,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광고물, 전단지, 잡지 등을 이용해 판매하거나,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전자상거래법2조)
- 반면, 국내선은 통신판매가 가능해, 국내선 탑승자가 구입을 원할 시, 기내에서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서를 작성해 결제하면 택배로 자택에서 받을 수 있음

### □ [문제점] 국제선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항공사 수익성 악화 심화

- 항공사 간 경쟁 심화·운임 하락으로 부대수익을 통한 수익성 개선 필요
- 기내 적재공간이 매우 협소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이 필수
  - \* 국내 LCC의 주력 기종은 189석의 B-737로서 적재공간이 매우 협소
  - \* 현재 매출 단가가 낮은 식음료(콜라, 라면 등) 위주의 상품을 탑재해 운영중

### □ [정책과제] 어려운 항공 업황을 고려해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허가

### 3. 항공운송지원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항공운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들도 경영난 봉착
  -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국가의 입국 통제가 강화되어 운항 중단이 급증함에 따라 '19년 대규모 적자에 이어 '20년 상반기 최소 3조 6,833억원\*의 대규모 매출손실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
    - \* 한국항공협회 '20년 2월 2주 국제선 운송실적 기준 산출
  - 유럽, 미국 등 주요 비행 노선이 중지되면서 주요 항공사 뿐만 아니라 항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판단
    - \* 항공기가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항공기에 제공하는 용역서비스 사업으로 항공기 유도, 견인, 급유, 수화물 상/하역, 항공기 내,외부 청소, 기타 지상조업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종
- [문제점] 코로나 19 확산으로 항공사와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운송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급격한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임차료, 급유시설 임차료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방공항의 지상조업 업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사는 포함되었으나 항공운송지원업은 포함되지 않음
    -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 발표('20.3.16)
- [정책과제] 항공운송지원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항공운송지원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 급유시설, 화물터미널 등의 임차료 면제
  - 항공운송지원 회사의 지방공항 사무소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 필요



## 1. 가전제품 수요 창출 촉진제도 마련

□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가전제품 수요 및 매출 감소 우려

○ 신제품 출시와 결혼·신학기·이사철이 맞물려 전통적으로 봄철 가전수요가 높았으나, 코로나19사태로 가전업계 시장수요 급감

○ 출시 초기 오프라인 체험이 중시되는 가전 신제품 체험행사 불발

\* 연초 소비자대전쇼(CES)에서 선보인 식물재배기, 신발관리기 등 신가전 제품 출시 연기

□ [문제점] 계절가전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양책 필요

○ 공기청정기(3~4월), 에어컨(5~7월) 등 계절가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판매시기를 놓쳐 피해가 우려됨

□ [정책과제] 내수활성화 촉진 제도를 통해 기업의 매출감소 부담 경감 추진

○ 계절가전(공기청정기, 에어컨)에 대한 정부 공공조달 특별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 참고사례: '19년 3월, 미세먼지 사태로 공기청정기 추가 예산 300억(5만대) 편성, 상반기 중 3.7만대 집행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편성예산(1,500억원→3,000억원) 및 품목(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다양성 확대,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 필요

\* 내용: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를 구매자에게 환급 (개인별 30만원 한도), 1,500억원 예산으로 올해 3.23~12.31 한정 시행

\* 환급대상 품목: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 1. 수출 장비의 항만 대기 관리비 부담 경감

□ [현황] 중국 우한지역 등의 교통·통관통제에 따라, 수출용 디스플레이 장비의 항만 선적 대기 사례 다수

○ 코로나19로 인한 통관통제 장기화 및 고객사 요청 등으로 다수의 수출 예정 디스플레이 장비가 항만 물류 창고에 선적 대기

□ [문제점] 항만 대기 관리비 부담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물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예 : 장비 1대를 부산항 창고에 1개월 보관시 크기에 따라 약 500만~1천만원 비용 발생

기업	주요내용
A社	건식식각기 1대(약100억원) 부산항 물류창고 대기 * 2.15일 선적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
B社	현상기 1대(약14억원) 부산항 물류창고 대기 * 2.19일 선적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

□ [정책과제] 수출 대기물품을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또는 물류회사 지급 관리비 지원

## 1.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 [현황]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배달 판매 금지
-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중국·미국 등에서는 보편화
  - \* (법적근거) 의료법 제34조, 약사법 제22조·제50조
  - 중국: 알리헬스 앱을 통해 매일 10만명 이상 환자 원격진료
  - 미국: 국민의 약 25%가 원격진료 서비스 이용(중기중앙회, '18.6월)
  - 우리나라에서는 '19.7월 강원도 원주·춘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최초로 환자 자택에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승인
- 최근 정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2.24)하였으나 사실상 권고에 그치면서, 의료진의 참여율이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의사-환자 간 전화만으로 상담·진단·처방 가능/약사-환자 간 전화 복약지도, 택배를 통한 의약품 배송 허용(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 [문제점] 의료기관 관련 국민 불안감 확대, 의료진 감염 위험도 커지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역량 약화 초래 우려
- 최근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특례 인정 필요성 증대
-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진 직접 접촉에 의한 의료진 감염 위험 역시 커지고 있는데, 의료진 감염을 예방하고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실효성 확보 필수

- [정책과제] 국민 건강권 확보와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적 실시 후, 원격의료 본격적인 도입 검토
- 위급상황임을 감안, 주요 거점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 희망시 원격진료 의무화 실시(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통한 시범사업 실시,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통한 행정명령 등)
- 한시적 실시(1~3년) 후, 효과성 검증되면 원격의료 본격 도입 검토

## 2.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 □ [현황]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입주 불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상업 생산시설 입주 불가능

\* (법적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제35조):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 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시행령 [별표6]): 연구소, 학교, 도서관, 국방·군사 연구시설 등 일부에 한정

### □ [문제점] 별도 생산시설 확보에 따른 상업생산 지연 발생으로 향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적기 생산 차질 우려

- 바이오의약품 개발은 통상 연구개발 → 임상시료 생산 → 임상시험 → 승인 → 상업생산 및 판매 순으로 진행
- 의약품 승인 관련 규정상 임상시료를 생산한 시설에서만 상업생산 가능
  - 임상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상업생산을 하게 될 경우 ‘생산지 변경(site change)’ 으로 간주되어 임상시험 불인정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소재 기업들은 임상시료 생산 단계에서 별도의 상업생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부담 발생
- 향후 코로나19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생산 차질 우려

### □ [정책과제]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에 있는 시험생산 시설에서 생산한 의약품이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상업생산도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코로나19 대응 등 위급상황 시 긴급 의약품 적시 생산 역량 강화

## 1.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 유예

- [현황] 정부는 건강보험 기등재 의약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해 약가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
- 임상 효능, 재정 영향 등을 포함하는 약제 재평가\* 제도 시범사업 시행('20년) 및 단계적 적용 추진
  -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약제의 약효를 재평가해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약품에 대하여 가격을 내리거나 아예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
-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 예정
- [문제점] 코로나19 사태로 제약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약제 재평가 연내 시행시 규제 부담 가중
  - 제약업계는 의료기관 방문 환자 감소로 인한 매출 영향, 해외 임상 시험 차질,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애로가 많음
  - 이미 유효성을 입증(허가)한 약제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험급여 중임
- [정책과제]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1년) 유예
  - 제약업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 시행 재검토 및 잠정 유예

## 1.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 [현황]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 감소 가능성

○ 우한 폐렴으로 중국 내 산업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 자동차업계도 2.4일부터 생산차질이 발생

\* 2만 여개 부품으로 조립되는 자동차는 어느 하나 부품의 생산이나 조달이 중지될 경우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며 여타 부품 생산도 중단되는 특징이 있음

\* 2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4% 급감했고 내수와 수출도 18.8%와 25.0% 감소(산업자원부)

○ 2월에는 중국산 부품 생산 차질에서 비롯된 공급 위기를 넘기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까지 글로벌 수요위기 당면

\* 2월 와이어링하네스(일종의 전선뭉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부품 공급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됨에 따라 50~70% 선으로 하락했던 부품업체 가동률이 3월 들어 90% 이상을 회복했으나 추후 생산 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것

○ 2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2만 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6.1% 줄었으며, 이러한 수요 감소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

\*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 멕시코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용 부품 상당수를 국내에서 조달하므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경우 국내 부품업체에 타격

### □ [문제점]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인하 한시적 시행

○ 현재 3월~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

### □ [정책건의]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취득세·유류세 한시적 인하

○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감면의 6개월 연장

\* 현재 6.30까지 시행예정이나, 내수활성화 위해 연장 필요

○ 취득세·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 관련 내수 활성화 추진

## 1. 한전·발전사 관련 제품 생산업체 지원

- [현황] 한전과 발전사 대상 초고압기기의 납품계약 진행 중
  - 국가 기간산업인 한전과 발전사 대상으로 민간 기업에서 초고압 기기(변압기/차단기)의 2020년 계약이 완료되어 진행 중
- [문제점] 생산차질과 부품 수급에 어려움으로 납기 지연 발생
  -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지인 경남, 경북에 공장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가 위치할 경우,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자재 조달로 납기 차질에 따른 연체료 발생 전망
    - \* 초고압기기(변압기/차단기) 생산업체 A사는 중국에서의 부품 수급에 약 1.5개월 지연되는데다, 공장과 주요 협력사가 경남, 경북에 위치해 있어 자가격리 등으로 정상 가동이 어려워 0.5개월 지연돼 약 2개월 지연 중. 또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한국 방문 기피로 수출품의 고객 입회시험이 무기한 지연 중
- [정책과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선금지급률 상향등을 통한 민간 기업 경영애로 개선
  - 바이러스로 인한 납기 차질 경우, 연체료 3~6개월 면제 검토
    -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제3항 지체 일수 산입하지 않는 경우 (1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호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 4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
  - 국내 출장 등 지역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한전 및 발전사 관련 제품의 고객의 방문 입회 검사에서 서류 대체 또는 한시적 면제
  - 생산/판매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계약서 기준 납품 전체 고객 대상으로 제품 최종검사를 납기 1~2주 전에서 3~4주 전으로 조정운영 가능하도록 중재/지원(상반기 한시 시행)
  - 계약 대금 선금 지급 및 선금지급률 상향(한전의 경우 現 70% → 90%)을 통한 기업의 단기 경영환경 개선



### Ⅲ.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역할

#### ① [예방·확산 방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사업장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하여 대응·대비책 수립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의 가용한 자원 총 동원
- 임직원의 가사·육아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근무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기여

#### ② [투자집행 노력] 계획된 투자계획을 예정대로 추진

- 기업에서 수립했던 투자계획을 최대한 예정대로 추진하며, 경제회복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 마련 및 신산업 발굴 노력 지속
- R&D 십년대계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발굴과 동시에, 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

#### ③ [고용안정 노력] 고용유지 및 정상화 노력 지속

- 얼어붙은 산업업황 속에서도 既수립한 직원 채용 일정을 가급적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며, 언택트(비대면) 방식의 채용 전형 확대
- 불황기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불요·불급한 비용 절감 등 고용조정 요인을 축소하여 고용불안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

#### ④ [상생 강화]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 협력 강화

- 기존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하여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힘쓰며,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해외 마케팅 강화, 수출 판로 개척 노력과 동시에 협력업체와 동반 해외진출 노력

⑤ [사회공헌 확대] 사회공헌 활동 지속 및 재난특별 활동 전개

- 경기침체 하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봉사, 기부, 교육 프로그램 등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
- 재난 극복을 위해 기업 차원의 피해 지역·계층 특별 지원 확대

⑥ [민간외교 확대] 경험 파트너들과의 공조협력 및 갈등요인 해소 노력

- 한국발 기업인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 철회/자제 요청
  - \* 전경련 회장명의 「기업인 입국제한 조치 철회 서한」 既발송(교역액 1%이상 상위 18개국-중, 미, 일, 베트남 등- 법무·외무장관대상 / 3.12)
- 주요국 파트너들과의 코로나 사태 공동 대응 및 기업인 이동 원활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 채택
  - \* 한국, 미국, 영국, EU, 독일 등 16개국의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글로벌 경제단체 연합체인 GBC(Global Business Coalition)를 통해 ‘기업인 이동 원활화 촉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저지를 위한 규제 철폐’,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및 국가별 재정정책 시행 촉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 합의서 채택(3.25)
  - \* 美상의와 공동으로 ‘국제 무역 원활화를 위한 항공 물류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 ‘의료 물품의 차질 없는 수송을 위한 민관 협력’ 등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3월말 예정)
- 핵심 교역국가와의 현안 및 갈등요인 해소 위한 민간 차원 노력 확대
  - \* 미·일 현안 맞춤형 민간 차원 화해무드 조성 및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재계회의」 추진 (미-한미동맹 강화, 일-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

⑦ [경제협력강화]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민간 차원 투자유치 촉진

- 주요국과 통화스왑 체결을 위해 美상의, 日경단련 등 본회 주요 파트너와 통화스왑을 위한 공동건의 및 對언론사업 통한 분위기 조성 노력
  - \* 한미재계회의, 한일재계회의 등 민간 경험 채널 공식 건의
- 코로나19 장기화시 국내 외투기업 41%가 한국내 사업 축소를 고려 (전경련, 3.23)하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를 막기 위해 민간 차원노력

- \* 올 하반기 GBC(Global Business Coalition, 세계경제단체연합) 서울총회시 對韓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비즈니스 세션 강화하고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과의 경험위에서 對韓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핵심아젠다化

○ 코로나19 소강이후, 금번 사태로 세계적 인지도를 얻은 韓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및 IT 기반 의료시스템 ‘K-메디’ 패키지의 해외진출 도모

- \*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중동, 아세안 등에 의료산업 투자 유치 및 수출 미션단 파견 추진
- \* K-메디 패키지: IT기반 혁신적 의료기기, 효율적 병원운영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한국형 의료 토털서비스